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 근거 마련 〉
■ 정필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568)

2023.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 근거 마련(안 제25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필모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3. 9. 20.

다. 회 부 일 : 2023. 9.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방송채널사용 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방송채널사업자(이하 “복수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의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복수채널 사용사업자에 대해서도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Ⅲ. 검토의견

1.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 근거 마련(안 제25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기금의 조성) ①·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제25조(기금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u> ----- ----- ----- ----- ----- 1.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2.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여러 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

현행	개정안
<신설>	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¹⁾,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²⁾에 따른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행법 제25조제3항에 근거하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정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고³⁾,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정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⁴⁾.

- 개정안은 이러한 분담금 징수 대상 범위에 “여러 개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사회적 책무를 일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한국방송협회는 현재 분담금 징수 대상을 주파수 무상 이용 및 배타적인 사업권을 부여받은 방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전송이 가능해져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이 축소된 점 등 방송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복수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가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임.

- 다만,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 검토 의견과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복수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과대상이 배타적 사업권이 없는 등록사업자로 특별한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 부과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분담금 부과에 법적 정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신중 검토 필요 의견임.
- (부과대상)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배타적 권리를 얻은 허가·승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조성 중이나 개정안에 따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규제 또는 사업권 부여로 인한 특별한 이익이 제한적임.
- (부과기준) 2022회계연도 기준 개정안에 따른 방송서비스매출액 3,000억 이상 사업자는 CJENM 한 곳이기 때문에⁵⁾, 매출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5) 2022년도 방송서비스매출액 1조 77억원임.(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 (헌법적 정당성) 부담금은 특별히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에게 특별한 재정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적 정당화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현재 부과대상인 허가·승인 사업자와 달리 등록사업자인 점, 합리적인 부과기준 제시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의견임.
- 셋째,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는 등록사업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도 특정 기업만을 타겟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업 발전 저해 및 평등의 원칙 위반 등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고, 비허가/승인 사업자의 유형에는 PP 이외에도 OTT, CP 등 다양한 사업자가 포함되므로 개정안은 이들 사업자 간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수용 곤란 입장임.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공적책임을 분담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장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등록사업자로 배타적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 특정 사업자를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평등의 원칙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점 등에서 과기부 및 방통위가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226